

진동방지형 방폭(밀폐)형 등기구 시방서 (SMG-EP100/300/500)

1.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본 등기구는 고압방전 및 백열, 삼파장 램프등을 사용하는 진동방지형 방폭(밀폐)등기구로 터빈실, 정비공장, 전기 배전실 등에서 조명하는데 사용된다.

1.2 분류

모델명	규격		비고
	적용규격	형태	
SMG-EP100/300/500	100W~400W	방폭형 등기구	NH / MH / BL
	~ 30W		EL
	~ 200W		IL

1.3 참조규격

1.3.1 특허(0536566),

1.3.2 한국산업규격(KS)

- KS C 8001 방폭 조명기구 통칙
- KS C IEC 60227-5 유연성 비닐케이블(한국표준협회)
- KS C 8302 소켓(한국표준협회)

1.4 제출물

1.4.1 제작 상세도

-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 제출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(1)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
 - (2) 제품 자료 : 등기구의 재질, 치수, 형태 등 제반사항
 - (3) 견본 : 등기구 1개 씩

1.5 타 공종과의 협조

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시, 전기설비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2. 재 료

2.1 진동방지형 방폭등기구 재질

2.1.1 몸체

- 내구성 및 내식성이 강한 고순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

2.1.2 유리

- 열 및 외부충격에 강하여야 한다.

2.1.3 패킹

- 열과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.1.4 취부방법

-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팬던트 취부, 실링 취부 등으로 취부한다.

2.1.5 진동방지형 소켓(Master-mogul)

- 진동방지형 소켓의 완충부재는 내열성 방진실리콘으로 몰드로 성형 제작한다.
- 소켓은 KS규격 C8302의 기준에 준한 E-26 또는 E-39 자기체 소켓을 사용한다.
- 진동방지형 소켓은 전(全)방위의 충격과 진동을 완충, 흡수하여 전구의 이탈과 램프의 파손을 방지해야한다.

2.1.6 전선

- 리드선은 실리콘 피복 석면선 2C x 0.75SQ 또는 VCTF 3C x 1.0SQ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리드선은 인출 길이는 50cm이어야 한다.

2.1.7 볼트, 너트, 기타부품

- 모든 볼트, 너트, 기타부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또는 STS 27종을 사용하여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.

2.2 자재 품질관리

2.2.1 시 험

- 진동방지형 방폭등기구의 성능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시험항목	시험기준	판정기준
진동시험	진동주파수 : 5Hz ~ 70Hz 진폭 : 2.0G 이상 축 : 상/하 진동, 가진 시간 : 15분	소등되지 않을 것
온도시험	점등 후 (정격 220V, 60Hz 인가) 등기구 내부온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12시간 경과 후 방진 실리콘의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	양호할 것

2.2.2 반입자재 검수

-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.
-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.

2.3 현장 품질관리

2.3.1 점등시험

-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를 완료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2.3.2 시공상태 확인

-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- (1)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
- (2) 등기구 고정 상태
- (3) 등기구의 수평, 수직 상태
- (4) 등기구 설치 후 램프의 풀림이나 파손상태

3. 하자보증기간

3.1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.